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학과내규 전문

개정 2006. 0. 0.	개정 2007. 0. 0.	개정 2008. 0. 0.	개정 2009. 0. 0.	개정 2010. 0. 0.
개정 2011. 0. 0.	개정 2012. 0. 0.	개정 2013. 0. 0.	개정 2015. 12. 9.	개정 2019. 1. 17.

규정 항목	내 용
①지도교수 선정 방법 및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수 제한의 여부(§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교수는 학생의 희망과 학과 교수 의견을 들어 정한다. ■ 지도교수 1인당 지도학생 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삭제>	■ 해당사항 없음
③교수1인당 매학기 담당과목 제한 수에 협동과정 과목 포함 여부(§16-③)	■ 학과 교수의 매 학기 담당과목은 2과목 이하로 한다. 다만, 협동과정 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학생이 소속학과의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소 학점(§17-④)	■ 학생은 식품공학과 교육과정에서 석사과정은 15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⑤타 대학원 기 이수학점 인정여부(유효기간 및 학점인정범위) (§24-③)	■ 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의 대학원(연구과정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⑥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시험 석.박사학위 과정별 부과 과목수(§29-②)	■ 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중 외국어시험 과목수는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과정 모두 1과목으로 한다.
⑦논문작성계획서 발표에 관한 사항(§32-②)	■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자는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할 시기에 학과교수진에게 계획서를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공개발표는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하고, 논문작성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⑧논문지도위원회 운영 유무 및 세부사항(§35)	■ 지도교수는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⑨보충학점 취득에 관한 사항 (학칙제68조③)	■ 석사, 박사과정 입학자에 대한 보충학점 대상자 선정 및 이수학점은 하위과정에서 취득한 성적표에 의해 입학전형평가위원회(해당 학생의 입학전형 당시 면접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과정 모두 최소 3학점 이상 최대 15학점을 이수하도록 권고한다.
⑩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에 관한 사항(§17-⑧)	■ 학생이 각 교수당 총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의 40% 이내로 한다. (석사는 9학점, 박사는 15학점, 석박사 통합은 24학점)
⑪기타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심사위원은 석사과정은 3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인으로 하되,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 과정의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은 우리 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심사위원으로 정한다. ■ 석사 졸업예정 학생은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학위논문 관련 논문을 1편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졸업예정 학생은 학위논문 내용의 일부를 전국규모 관련 학회(학진 등재)에 제1저자로 1편 이상 투고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단, 취업학생은 201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의 분야는 ①식품공학, 식품가공학 ②식품화학, 영양화학 ③식품미생물학, 식품생물공학 총3분야로 한다. 이 중 석사과정은 2분야, 박사과정은 3분야로 하고 이 분야의 순서는 관계 없으며, 시험은 각 분야 당 1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 종합시험면제에 관한 사항: 우리학과는 종합시험 면제기준의 2호만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면제 신청자격은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 3.75(4.5만점 기준)이상인 학생이다. 면제 기준은 해당 학위과정 재학 및 수료기간 내에 SCI(SCIE)급 등재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이 Accept(게재승인)된 석,박사 과정생으로 석사과정은 1편,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2편으로 한다. ■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은 토익 750점을 기준으로 한다.
⑫부칙조항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는 시행일 당시 재적생(재학, 휴학 및 수료 포함)에게 모두 소급 적용한다.